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34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나3412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3424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6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7. 11. 29.부터 2027. 11. 29.까지, 피보험자 C, 만기보험금수익자 원고, 월 보험료 105,000원, 보험종목 'D'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경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의 위험률 변동을 상품 개정에 반영하여 2019. 4. 이후부터 새로이 체결되는 오토바이운전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기존에 판매된 동종 보험의 보험료보다 낮게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4.경 이 사건 보험과 같은 보험종목인 오토바이운전자보험 상품인 'E'의 월 보험료를 이 사건 보험료보다 낮은 65,21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신의칙상 기존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험료 인하사실을 통지 내지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9. 4.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로 매월 105,000원씩을 원고가 2020. 7.경 비로소 위와 같은 보험료 인하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9. 4.부터 2020. 7.까지 16개월간 매월 이 사건 보험의 월 보험료와 위

인하된 월 보험료의 차액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636,480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636,480원의 100배에 상당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통약관 제15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가정용 및 기타용도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운행목적을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료 중 차액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2019. 4.부터 새로이 체결하는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기존에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보다 낮게 정한 사정은 위 보험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차액보험료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 위 보통약관 제42조에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고,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할 경우 이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기간 10년으로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비갱신형인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험의 만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과 같은 보험종목의 보험료 개정을 하였더라도, 위 개정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도 위 개정된 보험료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과 같은 보험종목의 보험료를 개정하여 이를 개정 이후에 체결되는 보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 내지 고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보험이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비갱신형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기존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통지 내지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위와 같은 보험료 개정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받은 행위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2019. 4.부터 새로이 체결되는 오토바이운전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기존 판매 보험의 보험료보다 인하하는 보험료 개정을 하고서 이를 기존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통지 내지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보험료와 위 개정된 보험료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거나, 또는 계약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